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4호로 2021년 8월 19일 고기관·이용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화제를 영등포구의 대표 영상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영상문화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안 제1조 ~ 제2조)

나. 영화제 주최 및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5조 ~ 제9조)

라.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8. 20. ~ 8. 24./ 5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9년 아시아 최초의 초단편영상제로 시작되어 2021년 13회를 맞이하였으며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진 영상문화축제로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극장, 지하철, 온라인 등에서 상영함. 매년 9월 영등포아트홀, CGV 영등포, 지하철 역사 등과 온라인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시상식 등 공식행사 외에도 초단편영화아카데미, 어린이영화제, 다큐멘터리 소재 공모전, 씨네토크,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됨.

초기에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로 2009~2012(1~4회) 구로구, 2013~2016(5~8회) 동작구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9회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에서 개최하며 올해부터 명칭을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로 변경하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영등포구의 대표 영상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에서 주최·주관하며 2021년 사업 예산은 구비 2억5천, 시비 2억9천, 국비 6천, 자부담 4천만원으로 총 6억 4천이 편성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영화제의 명칭, 주최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화제의 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지역 영화인 육성 및 영상 제작 교육, 국내외 영화제 교류사업으로 명시함.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화제의 업무 추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